

# 「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5월 2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4년 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9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
(2024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주현관)

#### 가. 제안이유

-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100,000천원으로서, 이중 2건에 97,6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	<u>계(2건)</u>	<u>97,600천원</u>
○ 우박 피해농가 지원		90,100천원
○ 냉해 피해농가 지원		7,500천원 임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- 예비비는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,

- ▶ (일반회계) ~ 계상하여야 하고 (기타특별회계) ~ 계상할 수 있다
  - ▶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
  - ▶ 예산안 심의시 폐지·감액된 지출항목 분야에 예비비 사용불가
- 또한,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계법령에 의거, 그 사용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202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100,000천원이며, 예비비 지출은 1개 부서에서 2건에 97,600,000원을 지출결정하여, 그 중 97,599,950원을 지출하였으며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.
- ▶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2건, 97,600천원 (예산액의 8.9% 지출 결정)

<예비비 지출·집행현황>

(단위: 원)

회계별 (구분)	지출 건수	지출 결정액(a)	지출액 (b)	이월액 (c)	집행잔액 (d)=(a-b-c)	비고
합계	2	97,600,000	97,599,950	0	50	
일반회계	2	97,600,000	97,599,950	0	50	
일반예비비	0	0	0	0	0	801-01
재난목적 예비비	2	97,600,000	97,599,950	0	50	801-02
기타 특별회계	0	0	0	0	0	

-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
- ▶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로
    - “4월 냉해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”,  
 “6.10~6.11 우박 피해농가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” 등 총 2건의 재난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.
  - ▶ 자연재난 복구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에

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